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
지원 조례안
(건강증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99호
- 나. 제출자 : 정재동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적인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난임극복 지원사업과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9조)
- 사. 비밀누설의 금지를 명확히 함(안 제10조)
- 아.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4. 관계법령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
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, 제11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임신·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 경감에도모하고,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 -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“난임”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.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극복 관련 정책 추진·발굴 등의 노력을 명시함.
 -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,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.
 - 안 제7조에서는 난임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안 제8조에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·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 조치 하도록 함.
 - 안 제10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함.
- 난임의 원인으로서는 늦어지는 결혼나이, 취업난, 경제여건 등 사회 구조적인 원인과 함께 술, 담배의 생활습관, 기름진 식단, 운동 부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생식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난임부부는 약 15%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
 - 의학계에서는 그 중 남성의 원인비율을 40%로 보고 있다고 알려줘 있어 남성들의 소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
 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모자보건법」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22. 6. 15.] [법률 제18580호, 2021. 12. 14., 일부개정]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5. 23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(아동의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)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·방법·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 12. 14.>

모자보건법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12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11조(난임극복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5. 23., 2015. 12. 22.>

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22.>

1.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
2.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
3.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전문개정 2009. 1. 7.]

[제목개정 2012. 5. 23., 2015. 12. 22.]